

# **2018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검토보고서**

2017. 12. 6.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 **1. 제안자: 성동구청장**

### **2. 제안이유**

가. 「(재)성동문화재단」은 2015년 7월1일 구민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브랜드 가치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지역문화진흥 및 생활문화 활성화등을 위한 출연금을 매년 예산 편성하여 지출하고 있음

나. 이에 2018회계연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출자·출연 개요

1) 대상기관: (재)성동문화재단

2)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재정 지원)

나. 2018년 출연금 산출내역

1) 출연금: 7,438백만 원

2) 성동문화재단 예산편성(안)

(단위: 백만 원)

세입예산			세출예산	
합계	사업수입	잉여금	구 출연금 (*교육지원과 구민대학 출연금 86백만 원 포함)	인건비, 경비, 자본적지출
9,448	1,710	300	7,438	9,448

다. 연도별 출연금 출연현황

(단위: 백만 원)

연도	2015년 (7. 1 ~ 12. 31)	2016년	2017년	2018년(예정)
금액	3,439	6,365	6,425	7,438

#### 4. 참고사항

- 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재정 지원)

##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15년 7월 1일 출범한 성동문화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전 의결 받고자 구의회에 제출한 건임
- 2018년도 성동문화재단 출연금은 전년도 대비 10억 1,321만원이 증가한 74억 3,791만원이며 전체 세입 예산은 사업 수입 17억 985만원과 잉여금 3억원을 포함하여 총 94억 4,777만원임
- 세출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 48억 7,511만원, 도서 구입비 1억 5,500만원, 기획 공연비 1억원, 메세나 활동지원 9,800만원, 성동구립도서관 무인도서대출 반납기 설치 및 안내데스크 교체에 3,850만원 등으로 전체 세출 예산은 94억 4,777만원을 편성하였음
- 문화재단의 설립 취지는 지역문화진흥과 주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전문적이고 자율적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진흥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것인 바, 관련 사업을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추진했던 시기와 차별화 될 만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문화 컨텐츠 발굴과 수준 높은 문화예술 사업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 단,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의회의 사전 승인은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 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 전에 출연 기관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